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으로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및 제25회 기관장과의 합의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 삭제조항 : 제8조(출장공무원), 제17조(휴가의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22조(공가), 제23조제2항(출산휴가)
 나.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 확대(제25회 기관장과의 합의사항) (안 제23조)
 ○ 포상휴가 대상 구체화(표창 및 직무수행 성과 공무원 등)
 ○ 자녀 군 입대 시, 입영행사 참석을 위한 특별휴가 1일 부여 신설
 다. 기타 불합리한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8136(2017.9.6.)〕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53567(2017.9.28.)〕
 ○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7. 9. 7. ~ 2017. 9.27.(21일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 · 공무원 · 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의 1”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근무기강확립)”을 “(근무기강 확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지켜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기위한”를 “하기 위한”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지휘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때”를 “경우”로, “장을 당해”를 “장은 해당”으로, “본직 기관장”을 “본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4의 규정에 의하여”를 “4에 따라”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지휘,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징계사유가”를 “징계사유에”로, “때”를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기타”를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된”을 “해임·파면된”으로, “소속기관의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모생신일”을 “부모 생신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로, “자에 대하여”를 “공무원의 연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를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원”을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월할계산한다”를 “월할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월할계산에”를 “월할 계산에”로, “소숫점”을 “소수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를 “감염병에 걸린”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별표3]”을 “별표3”으로, “얻을”을 “받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를 “여성”으로, “얻을”을 “받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얻을”을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얻을”을 “받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얻을”을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직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성주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②---------- 별표 1---------.
③ (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생 략)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②------ 별표 2---------- -- 준수하여야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적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하기 위한---------- ---------- ---------- ---------- ---------- 경우--------- ----------.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천재지변, 그 밖에 ---------- ---------- ---------- ---------- ----------.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 ---------- ------ 안 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 (생 략)	⑤(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 ·출장공무원 · ·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안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다만, 겸임업무에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을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휘·감독------. ②---------- 공무원이 ---------- 경우 ---------- 장은 해당 ---------- 본직기관의 장----------.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4에 따라 ---------- 공무원은 ---------- 지휘·감독 -------.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공무원이 ---------- 징계사유에 --------- 경우---------- ------- 해당 ----------..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 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주재하는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해임·파면된 ---------- ---------- 소속기관의 장은----------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따른다.	②---------- ---------- 「공무원증 규칙」---------.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관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3 일 6 일 9 일 12 일 14 일 17 일 20 일 21 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임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삭 제>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부모 생신일 ----------.
②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 ---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
③ (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
⑤ (생 략)	⑤(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⑥---------- 해당---------- 범위----------해당---------- 다음 연도 ----------.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해당 연도---------월할 계산한다. ---------- 월할 계산에 ---------- 소수점 ----------.
③ (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 ----------.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21조(병가)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 범위----------. ---------- -- 제20조제4항에 따라 ----------.
1. (생 략)	1.(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원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 별표3---------- ---------- 받을-------.

②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여성 ---------- 받을----------. ---------- ---------.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여성 공무원---------- 받을----------.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 받을-------.
⑥ ~ ⑨ 삭 제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5일 이내---------- 받을---------.
⑪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⑪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⑫ 군수는 성과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재난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⑬직원의 자녀가「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범위----------.